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2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4월 24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혜지,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이종태,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한 신,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20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두고 있고 각종 시범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케어러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주거비 문제로 나타남. 또한,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조례가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규정과 교육 관련 구체적 지원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나.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교육 지원사업' 추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 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략) <u><신설></u></p> <p>2. (생략) <u><신설></u></p> <p>3.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u>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u></p> <p>5. ~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